

감 사 의 견 서

「정치자금법」 제4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국민의힘의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23일까지의 회계처리내역에 대한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
다 음

1. 감사개요

가. 감사기간 : 2026. 1. 1. ~ 2026. 6. 23.

나. 감사대상

- 재산상황
-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

2. 감사의견 : 「정치자금법」 및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함

3. 특기사항 : 없음

2026년 6 월 30 일

감 사 자

(직 위) 예산결산위원장

(주 소)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, 국회의원회관 619호

(성 명) 서 천 호



- ☞ ① 감사의견서의 양식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으며, 회계보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권한 있는 기관이 감사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으면 이를 감사의견서로 인정할 수 있음.
- ② 감사의견에는 정당의 회계처리가 “「정치자금법」 및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”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야 함.
- ③ 감사자의 직위 등은 당헌·당규 상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, 당헌·당규 상에 감사기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에서 임시감사기관을 구성하여야 함.